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57호 2023. 10. 13.(금)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215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남해군 공고 제2023-1223호	남해군 희망올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4
남해군 공고 제2023-1225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남해군 공고 제2023-1226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남해군 공고 제2023-1227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남해군 공고 제2023-1229호	남해군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면적 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19
남해군 공고 제2023-1236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23
남해군 공고 제2023-1240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25
남해군 공고 제2023-124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7
남해군 공고 제2023-1244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33
남해군 공고 제2023-125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34
남해군 공고 제2023-125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	35
남해군 공고 제2023-1254호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8
남해군 공고 제2023-1256호	공시송달 공고	44
남해군 공고 제2023-1260호	공시송달 공고	45
남해군 공고 제2023-1261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46
남해군 공고 제2023-1272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48
남해군 공고 제2023-1274호	통행의 금지·제한 및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51
남해군 공고 제2023-127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53
남해군 공고 제2023-1279호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남해군 공고 제2023-1282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63
남해군 공고 제2023-1286호	분묘개장공고(2차)	65
남해군 공고 제2023-1287호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7
남해군 공고 제2023-1296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72
남해군 공고 제2023-1299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4
남해군 공고 제2023-1300호	공시송달 공고	78
남해군 공고 제2023-1301호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79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215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현행 조례상 남해군수 제출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남해군의회 의원 등 발의·제안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근거가 없음.
- 나. 비용추계제도 작성 대상을 남해군의회 의원 등 발의·제안 조례안으로 확대 추진하여 재정수반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확대(안 제11조)
 - 남해군수가 제출하는 의안 ⇒ 남해군의회 의원이 발의·제안 또는 남해군수가 제출하는 의안

- 나.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명확화(안 제14조)
 - 의안 주관부서 ⇒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
- 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정비(별지 서식)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9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발의” 를 “발의·제안” 으로, “순감소액을 추계(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한” 을 “순감소액(이하 “비용” 이라 한다)을 추계한”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 또는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 이라 한다)” 을 “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발의” 를 “발의·제안 또는 제출”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를 “업무 소관 집행부서에 서”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223호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52430 경남 남해군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남해군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
- 연락처 : 전화 055-860-3812, 팩스 860-3882, e-mail : b2eads@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전화 055-860-381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225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 지급됐던 수당의 지역간 형평성 고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 표기 삭제

- 제4조(지원사업) 제1항~제4항에 표기 되어 있던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 각각의 지원 금액 표기 모두 삭제

나. 명칭변경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9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5,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전화 055-860-3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및 그 미망인과 전몰군경” 을 “등과 그” 로, “군민” 을 “남해군민”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전의 제4호) 중 “ “참전유공자 미망인” 이란” 을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란” 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군에” 를 “남해군에”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수는 참전유공자·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을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 가. 참전유공자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 전몰군경 유족

라. 무공수훈자 유족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 또는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226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저소득 주민 정의 변경(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규정 완화(안 제3조)
 - 행안부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권고에 따라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지원에 배제되는 상황 방지
 - 다.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사항 수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9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6,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전화 055-860-3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을 “생활이 어려운”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남해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제3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4.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세대

제9조의 제목 “(지원예산 확보)”를 “(지원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확보”를 “확보 하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227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가. 보훈명예수당 지원금액 표기 삭제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 지원을 위함
- 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됐던 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보국수훈자 및 5·18민주유공자 추가)로 예우를 강화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금액 표기 삭제
 -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매회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로 지원 금액 삭제

나. 지급대상 추가 신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보국수훈자” 추가
-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 명칭 및 용어 변경

- 1)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명칭 변경
- 2) “지역인물론” → “지역인물록” 으로 용어 정정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9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5,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전화 055-860-3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 을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1항 중 “인물론” 을 “인물록”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을 “보훈명예수당”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족으로서” 를 “유족 및 보국수훈자로서” 로, “국가유공자로” 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으로서” 를 “특수임무유공자로서”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229호

남해군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면적 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남해군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 면적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면적 한계기준에 관한 규정」
2. 개정이유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관내 어촌계 및 수협 소유 면허 면적 한계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사항(안 제1조)
 - 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9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363, 팩스 055-860-370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수산자원과 스마트양식팀(전화 055-860-3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훈령 제 호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 면적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 면적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 소유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군 관내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소유할 수 있는 면허 면적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를 말한다.
3.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4.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해군 관내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면허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른 면허

제4조(면허의 결격사유) 남해군수는 관내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미 취득한 어장 및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신청한 어장 및 양식장 면적의 합이 350ha를 초과하는 경우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면허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3-1236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이 시행하는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년 7월 25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3. 사업장 위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90-1번지 일원
4. 사업 내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L=269m
5. 공고 기간 : 2023. 9. 7. ~ 2023. 9. 21.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8.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1]

□ 남해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공시송달 대상(토지 및 물건) - 소유자 및 관계인

연 번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남해군)	지 번	토지 지목 / 물건 종류		면적(㎡) / 수량		성 명	주 소 (현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공부	현황	공부	편입					
1	상주면 양아리	809	전	전	112	112	미등기1	-	김영팔		토지 대장상 소유자

○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장 위치	비고
남해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남해군수 (재난안전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남해군 공고 제2023-1240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이 시행하는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조성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년 7월 25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환경과)
3. 사업장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840번지 일원
4. 사업 내용 :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조성 A=44,274㎡
5. 공고기간 : 2023. 9. 8. ~ 2023. 9. 22. 까지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8.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남 해 군 공 보

(26) 제 757 호

2023년 10월 13일

[붙임 2]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매립장(처리장) 조성사업

○ 공시송달 대상(토지 및 물건) - 소유자 및 관계인

연 번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토지 지목 / 물건 종류		면적(㎡) / 수량		성 명	주 소 (현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공부	현황	공부	편입					
1	남해읍 평현리	1450-1	전	전	265	265	미등기01	-	윤0순		토지 대장상 소유자
2	남해읍 평현리	1448	전	전	572 *1/2	572 *1/2	장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로 116, 601호			
		1474	답	답	641 *1/2	641 *1/2					
3	남해읍 평현리	1841	답	답	770	770	-	-	파산자 미래신 용금고 주식회 사의파 산관재 인예금 보험공 사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5-12	가압류
									파산자 미래신 용금고 주식회 사의파 산관재 인조상 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5-12	가압류

○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장 위치	비고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매립장(처리장) 조성사업	남해군수 (환경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	

남해군 공고 제2023-124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차상위 계층 추가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의무화
 - 특수직급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정비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 실적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항목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수급자 또는” 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를 “18세 이상이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를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4 중 전산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란, 항공란, 조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 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 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 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	-------------------------------------	--

별표 5의2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 이 터	

별표 7의4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 업 기 사 자 격 증 가 산 비 율 적용: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별표 18 중 ⑦격무부서근무(1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투 자 유 치 (0.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점 : 500억원 이상 투자유치 - 0.5점 : 300억원 이상 투자유치 - 0.3점 :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 0.2점 :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 0.1점 : 20억원 이상 투자유치 ○ 적용 : 투자사업의 실행가능성을 <u>군무성적평정위원회</u>에서 인정하는 경우로서 핵심기여자, 팀장, 보조자에 대하여 배점의 만점 인정 	
⑦ 격 무 부 서 근 무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격무지정업무 6개월 이상 근무자 ○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 1점 - 2년6개월 이상 ~ 3년 미만 : 0.8점 - 2년 이상 ~ 2년6개월 미만 : 0.6점 - 1년6개월 이상 ~ 2년 미만 : 0.4점 - 1년 이상 ~ 1년6개월 미만 : 0.2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0.1점 ○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서 업무 담당자에 적용 - 인사이동으로 격무담당에 중단없이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이전 격무담당 근무실적을 인정하여 가산점 부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244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군이 시행하는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년 7월 25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 2.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경제과)
- 3. 사업장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40-1번지 일원
- 4. 사업 내용 : 꽃별테마공원 조성 A=93,614㎡
- 5. 공고기간 : 2023. 9. 9. ~ 2023. 9. 23.
-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남해군 공고 제2023-125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재0, 신복0	주소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00
	소하천명		안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563-3, 490번지		
	면적	4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3. 9. 13.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3-125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덕신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통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 나. 사업의 위치 : 설천면 덕신리 212-3부터 설천면 덕신리 1351-2까지
- 다. 사업기간 : 2019. 3. ~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 라. 사업의 규모: 하천정비 L=2,050m 등
- 마. 사업시행자 및 주소
 - 남해군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 가. 출입기간 : 2023. 9. 20. ~ 사업 종료 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
- 나.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조사

다. 출입할 토지구역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12-3일원 (토지조서 참고)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3.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3. 9. 12. ~ 2023. 9. 26.

나. 공고장소 : 남해군청, 설천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4. 문의 : 남해군청(재난안전과, ☎055-860-3494) 또는 현장대리인(국토보상원, ☎055-756-4440)

토지출입 목록

사업명: 덕산소유권 정비공사
 사업시행자: 남해군청

입권 번호	보상구분	소재지 (남해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물건의 종류	공부면적	면적(㎡) 및 수량		공유지분	지분별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의 권리 사항		비고
							권면적/수량	단위			주(소)동(가)	성명		주(소)동(가)	관리내용	
1	토지	덕신리	617-2	답	답	476.00	34.00	㎡	1/1	34.00	김○재	김○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	토지	덕신리	1108-1	과	과	747.00	24.00	㎡	1/1	24.00	김○	박○영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소유권이전등 구권가등기	
3	토지	덕신리	1109-2	답	답	1,345.00	218.00	㎡	1/1	218.00	김○남	동림은행주식회 사	정성남도 남해군 설천면 천남로78번길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서울특별시 중구 용인로 근거등권	
4	토지	덕신리	1109-1	도	도	202.00	27.00	㎡	1/1	27.00	한○례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2가			
5	토지	덕신리	1112-1	도	도	100.00	50.00	㎡	1/1	50.00	박○용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	토지	덕신리	1117-37	도	도	20.00	20.00	㎡	1/1	20.00	김○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	토지	덕신리	1117-33	도	도	23.00	23.00	㎡	1/1	23.00	김○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8	토지	덕신리	1117-34	도	도	50.00	50.00	㎡	1/1	50.00	김○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9	토지	덕신리	1871-1	답	답	1,725.20	299.60	㎡	1/1	299.60	김○주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0	토지	덕신리	1140-69	도	도	26.00	26.00	㎡	1/1	26.00	김○용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11	토지	덕신리	1366-2	도	도	36.00	36.00	㎡	1/1	36.00	정○조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12	토지	덕신리	1850-1	답	답	1,177.60	202.70	㎡	1/1	202.70	김○영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13	토지	덕신리	1394-16	도	도	14.00	14.00	㎡	1/1	14.00	이○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4	토지	덕신리	1394-1	전	전	717.00	717.00	㎡	1/1	717.00	미등기	서○기			토지정당 소유자	
합계						6,658.80	1,741.30			1,741.30						

남해군 공고 제2023-1254호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남해군에서 관리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저수지관리자 임무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저수지관리자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0월 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303,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전화 055-860-3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저수지관리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2. “저수지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남해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이하 “수혜자”라 한다)
 2. 위촉되려는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상시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가능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관리자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저수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혜자가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저수지 수문 개폐
2. 저수지 수문 진입로 및 제방 상부의 풀베기
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
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

제5조(임기) 저수지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

- 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수지관리자가 될 수 없다.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
- 2.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안전 지킴이

제8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원 신청) 제8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저수지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군수는 매년 저수지관리자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연번 40란 다음에 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저수지관리자 위촉 및 경비 지원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8조	건설교통과
----	-------------------	---------------------------------	-------

[별지 제1호서식]

저수지관리자 추천서

추천받은 사람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마 을 명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저수지명	소 재 지	수혜면적	비 고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추천받은사람)	(서명 또는 인)
-----------------------	-----------------	-----------

[별지 제2호서식]

저수지관리자 수당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남해군 공고 제2023-1256호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보상협의서류 및 의견서 공문 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 2.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4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 4.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 5. 공고 기간 : 2023. 9. 13. ~ 2023. 9. 28.(15일)
-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또는 토지소재지	비 고
1	김*우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5-27	지분3분의1
2	윤*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5-27	지분3분의1
3	박*익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5-27	지분3분의1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보상 관계서류 수령장소: 남해군 건설교통과 (☎ 055-860-3314)

남해군 공고 제2023-1260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보상협의서류 및 의견서 공문 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 공사
- 2.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소량마을 일원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4.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 5. 공고 기간 : 2023. 9. 14. ~ 2023. 9. 29.(15일)
-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또는 토지소재지	비 고
1	김*환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743-3	
2	박*준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762-3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본다.
- 보상 관계서류 수령장소: 남해군 건설교통과 (☎ 055-860-3314)

남해군 공고 제2023-1261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남 해 군 수

-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3.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9. 28. (15일간)

4. 공고내용

-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합니다.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관 : 전국 11개의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www.ceoedu.kr 참조)
 - 과 태 료: 적발 1회 50만원 / 2회 70만원 / 3회 100만원
-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444)로 연락바랍니다.

고시공고 대상

번호	면허번호	면허종류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비고
1	부산242015004***	골착기	최*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75번길 ***	수취인불명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	경남032016007***	3톤미만골착기	신*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	이사감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	서울182000009***	기중기,지게차	곽*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158번길 **	이사감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4	경기072015000***	3톤미만골착기	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직개로177번길 ***	수취인불명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5	경남242017001***	3톤미만로더	김*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 ** ***	일수없음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6	경남242018000***	3톤미만골착기	강*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 ** *****	일수없음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7	경기232018099***	골착기	이*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당녕로 ***-***	일수없음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남해군 공고 제2023-1272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남 해 군 수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618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30000	2023.10.01 2033.09.30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818번길 34-10	정성영외1 (정성주)	229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19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고현 갈화	100000	2023.10.13 2033.10.12 (10년)	남해군 고현면 갈화	화전어촌계	230호 재개발

※ '23/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

면허번호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22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30000	2013.10.01 2023.09.30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818번길 34-10	정성영 외1 (정성주)	
남해양식 제230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고현 갈화	100000	2013.10.13 2023.10.12	남해군 고현면 갈화	화전어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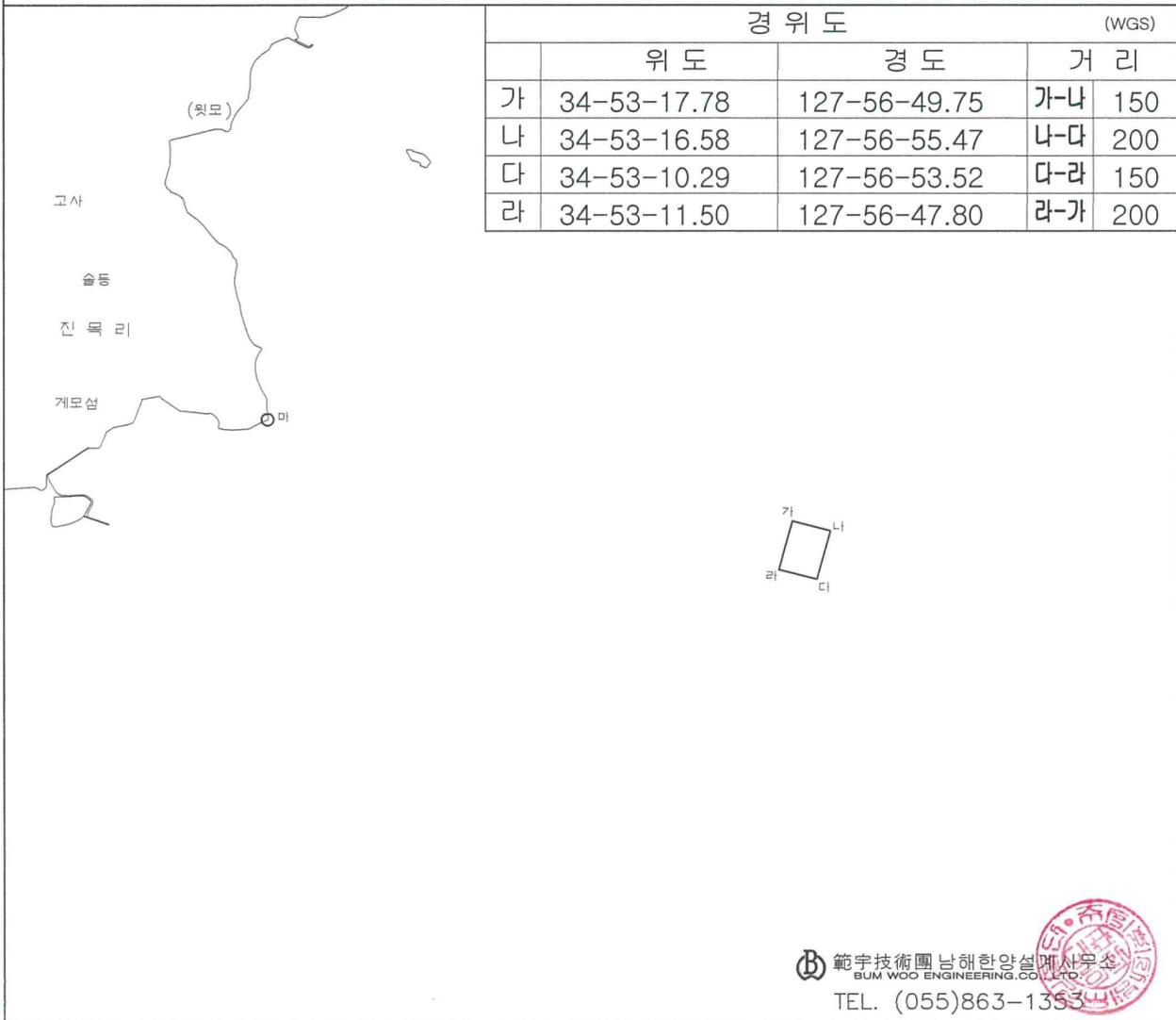
남해양식 제 618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닥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마) N 34-53-30.20, E 127-55-30.3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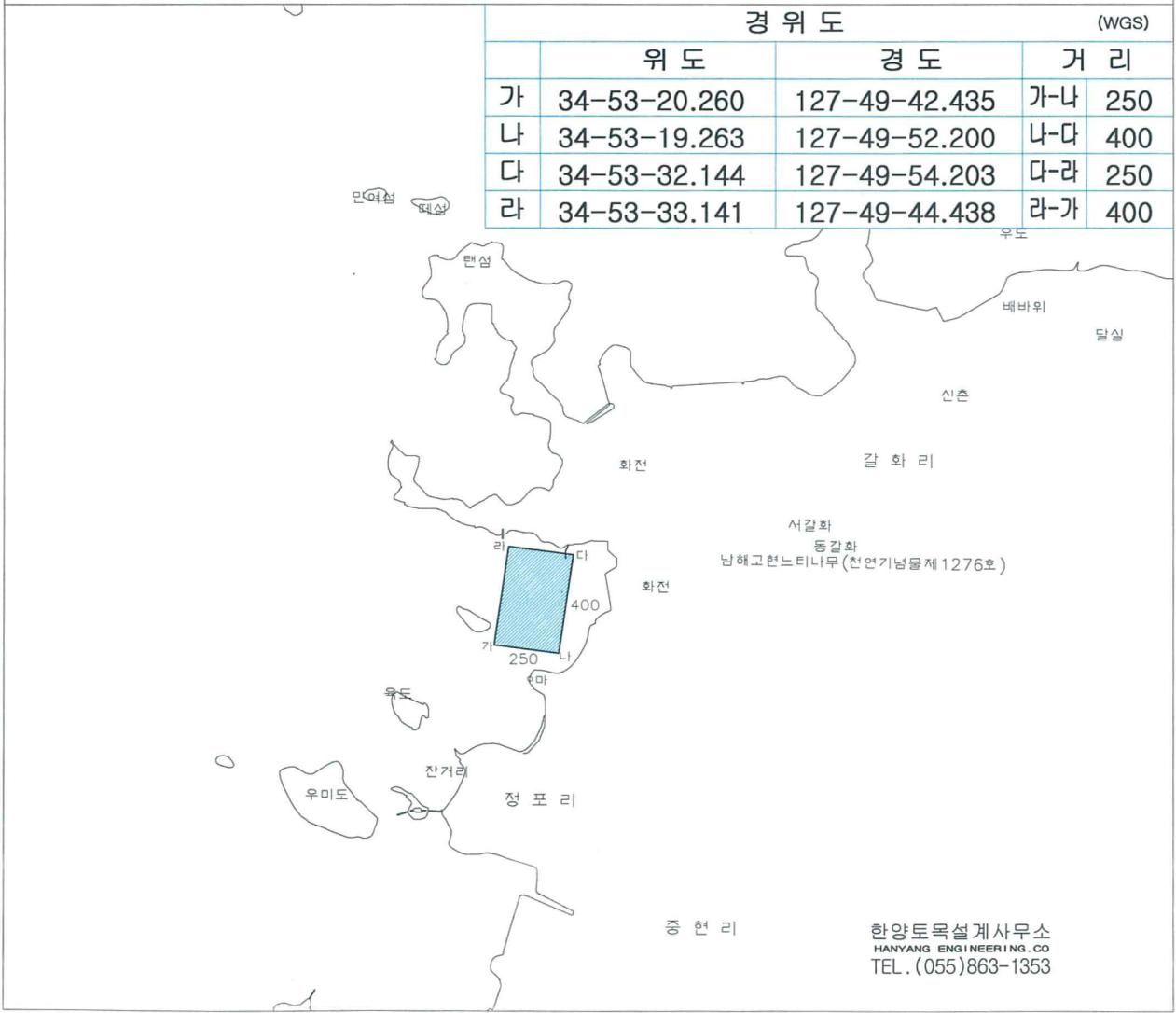
6. 면 적 : 30,000 m²



남해양식 제 619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화전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 (마) N 34-53-15.86, E 127-49-47.93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00,000 m²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3-1274호

통행의 금지·제한 및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덕신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따른 도로 이설공사 구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 및 보행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도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구간 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남 해 군 수

도로의 종류	남해군도	노선명	군도 2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면통제(모든차량 및 보행자)	구간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7-3 ~ 1117-52번지
기간	당초 2023년 3월 15일부터 변경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2023년 12월 30일까지	<103일 연장>
이유 - 덕신마을 건의 : 군도2호선을 기존 폭 5m에서 폭 6m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군도2호선 차량 및 보행자 이동 통제의 연장 필요 - 군도2호선 확장을 위한 추가 공중 시공에 따른 소요기간 연장 필요 -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붙임 1] 통행 제한[금지] 및 우회 노선 지정

- 1. 도로의 종류 : 남해 군도 2호선
- 2. 제한구간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7-3 ~ 1117-52(연장: 약 0.80km)
- 3. 대상차량 : 전면통제(모든차량 및 보행자)
- 4. 제한기간
 - 가. 당 초 : 2023. 3. 15.(수) ~ 2023. 9. 18.(월)
 - 나. 변 경 : 2023. 3. 15.(수) ~ 2023. 12. 30.(토) <103일 연장>
- 5. 연장사유
 - 가. 덕신마을 건의 : 군도2호선을 기존 폭 5m에서 폭 6m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군도2호선 차량 및 보행자 이동 통제의 연장 필요
 - 나. 군도2호선 확장을 위한 추가 공중 시공에 따른 소요기간 연장 필요
 - 다.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 6. 우회노선 : 설천면 덕신리 1380-2 ~ 1230-4 ~ 1117-1(연장: 약1.56km)



남해군 공고 제2023-127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외금마을회	주소	남해군 남해읍 당념로247번길 27
	소하천명		신비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읍 평리 765		
	면적	1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3. 9. 20.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3-1279호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 남해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변경 :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남해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다. 부실시공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바. 판정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사. 준공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0월 1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감사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감사팀(전화 055-860-305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감리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 “하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부실측정,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부실시공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군수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하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착공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실명이 아닌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실시공 신고처리)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제5호의 별점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시간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2. 부실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및 공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부실시공 정도에 따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요 구조부” 라 함은 시행령 별표 8 제1호 라 목을 말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남해군 회계·계약, 건설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접수에 따른 신고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판정결과의 조치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벌점부과에 대하여 부실정도의 불이익 내용 및 벌점의 관리 등은 시행령 별표 8 제3호 벌점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벌점의 책정기준을 통지할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준공표지의 설치) ① 발주부서의 장은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표지를 별표 서식에 따라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하매설공사나 수중공사는 제외한다.

- 1. 건축공사(신축공사에 한함)
- 2. 공원 및 조경공사
- 3. 신설 일반토목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 4. 시설물 설치공사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준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사준공 표지(제17조 관련)

공 사 명	
공사기간	
발주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담당자 : 시설○급 000)
설계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감리자의 성명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설기술자의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공사내역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시설물 : 설치현황, 규격 등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비 고	

※ 이 표의 규격은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cm×30c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하며, 글씨는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별지 서식]

부실시공 신고서 (제5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 여)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중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남해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3-1282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 군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남 해 군 수

- 1. 공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1.(21일간)
- 2.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3. 10. 11. 이후
-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하남폐차장 (붙임 참조)
-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방치차량 1대 (붙임 참조)
-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께서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폐차)를 하시지 않을 경우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내에 있는 모든 물품도 함께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강제처리(폐차) 후에는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만원 또는 150만원) 통고처분이

나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압류권자 등)은 상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055-860-3455)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내역

연 번	자 동 차	차 명	소 유 자(법인)	방 치 장 소	보관장소
	등록번호		성 명		
1	69라9790	아반떼엑스디	YAG*FAROV MA*SIM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01	하남폐차장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598)

남해군 공고 제2023-1286호

분묘개장공고(2차)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22일

남 해 군 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441, 1441-2, 1445-1, 1446-1, 1447, 1447-1, 1447-2, 1448, 1449, 1450, 1450-1, 1451, 1451-1, 1452, 1453-2, 1454-1, 1455, 1456, 1457, 1458, 1459, 1459-1, 1467, 1467-1, 1468, 1469, 1470, 1471, 1472, 1472-1, 1473, 1474, 1475-1, 1475-2, 1476, 1477, 1478, 1479, 1480, 1480-1, 1481, 1481-1, 1482, 1482-1, 1483, 1484, 1485, 1486, 1487, 1793, 1795, 1797, 1798, 1799, 1800, 1803, 1804, 1805, 1806, 1807, 1809, 1839-2, 1839-4, 1840, 1840-1, 1840-2, 1841, 1842-2, 1842-3, 1843-1, 1844, 1845, 1845-1, 1856, 1856-1, 1856-2, 1856-4, 1856-5, 1857, 1857-1, 1857-2, 1857-3, 1859-2, 1859-3, 1859-4, 1859-12, 1860, 1861, 1866, 1866-2 1867, 1867-1, 1931-1, 1932-1, 1932-2, 1932-3,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1, 1938-3, 1939-1, 1939-2, 1939-4, 산279, 산283, 산286, 산287, 산302, 산302-1, 산302-7, 산302-8, 산302-10, 산305, 산305-1, 산306, 산306-1, 산306-2, 산307-3, 산307-4, 산309, 산309-1, 산309-2

나. 분묘기수 : 35기

2. 개장사유 :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조성사업 구간 내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 남해군 추모누리 봉안당(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8)
4.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2023.09.22. ~ 2023.11.21. (2차 공고일로부터 60일간)
※ 1차 공고 : 2023.08.02. ~ 2023.09.11.
6.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 처리
 -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7. 신고(연락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과(055-860-3278)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 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1287호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부담금 감경 혜택 확대
3. 주요내용
 - 가.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액 기준 마련(안 제4조)
 -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 나.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 1)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취수량이 평균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
 - 2) 옥내 급수설비(지하수 계량기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의 누수
 - 다. 과태료 처분 조항 삭제(안 제15조,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0월 1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829, 팩스 055-860-378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전화 055-860-882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제10조제5항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영 제4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한다.

- 1.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취수량이 평균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
- 2. 옥내 급수설비(지하수 계량기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의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이 경우 감면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회전 또는 누수 기간 중 월 취수량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평균 취수량(직전 3개월 동안을 말한다)을 뺀 취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 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구분 시간계측기(유량계) 공회전 옥내 급수설비 누수 기타

신청자

성명
(법인명)

관리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소

신청내용

지하수시설
주소

지하수시설
용도

감면기간

감면사유

「남해군 지하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

- 시간계측기 공회전 또는 옥내 급수설비 누수 감면 신청 시
 - 1) 시간계측기 수리, 구매 확인서 또는 누수공사 확인서 1부
 - 2) 시공사진(전·중·후) 각 1매
- 기타 감면 신청 시 : 입증자료 1부

남해군 공고 제2023-1296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남 해 군 수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620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고현 차면	100,000	2023.10.13 2033.10.12 (10년)	남해군 고현면 차면	차면어촌계	231호 재개발

※ '23/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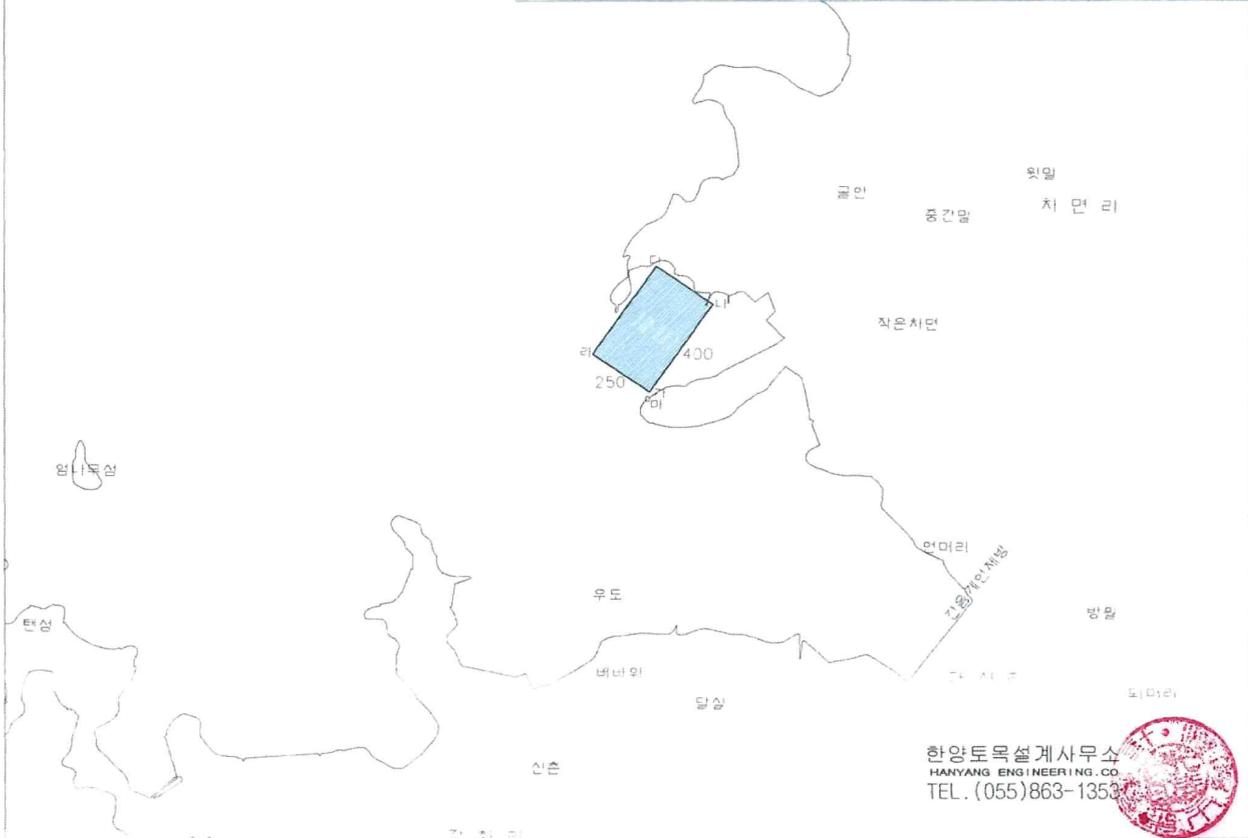
면허번호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231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고현 차면	100,000	2013.10.13 2023.10.12	남해군 고현면 차면	차면어촌계	

남해양식 제 620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차면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 (마) N 34-54-38.59, E 127-51-05.6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0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리
가	34-54-39.477	127-51-05.896	가-나 400
나	34-54-50.243	127-51-14.782	나-다 250
다	34-54-54.775	127-51-06.651	다-라 400
라	34-54-44.009	127-50-57.764	라-가 250



남해군 공고 제2023-1299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남해읍 관할구역 현행화 및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부지의 지적 합병을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남해읍 남변리, 평리와 창선면 상신리, 상죽리 관할구역 변경
 - 나. 별표 리 명칭과 구역 개정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남해읍	남 변 리	남변리 469-2, 469-3, 478-14, 479-1, 480-1, 480-2, 481-3, 481-4, 482, 483-1, 484-2, 485, 485-3, 486-1, 487-8, 501-20, 501-21, 643-27번지를 제외한 남변리 일원
남해읍	평 리	평리 일원, 남변리 중 남변리 469-2, 469-3, 478-14, 479-1, 480-1, 480-2, 481-3, 481-4, 482, 483-1, 484-2, 485, 485-3, 486-1, 487-8, 501-20, 501-21, 643-27번지
창선면	상 신 리	상신리 일원
창선면	상 죽 리	상죽리 일원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남해읍	남 변 리	남변리 일원
남해읍	평 리	평 리 일원
창선면	상 신 리	상신리 일원, 상죽리 중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
창선면	상 죽 리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를 제외한 상죽리 일원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6,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이동 명칭 및 관할구역)” 을 “(명칭 및 관할구역)” 으로 한다.

별표의 남 해 읍 32의 남변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 변 리 일 원

별표의 남 해 읍 32의 평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 리 일 원

별표의 창 선 면 32의 상신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신리 일원, 상죽리 중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

별표의 창 선 면 32의 상죽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를 제외한 상죽리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리 명칭과 구역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남 해 읍 32	북 변 리	북 변 리 일 원
	서 변 리	서 변 리 일 원
	남 변 리	남 변 리 일 원
	차 산 리	차 산 리 일 원
	선 소 리	선 소 리 일 원
	심 천 리	심 천 리 일 원
	아 산 리	아 산 리 일 원
	평 현 리	평 현 리 일 원
	평 리	평 리 일 원
	입 현 리	입 현 리 일 원
이 동 면 ~ 설 천 면	(생 략)	
창 선 면 32	상 신 리	상신리 일원, 상죽리 중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
	동 대 리	동 대 리 일 원
	당 향 리	당 향 리 일 원
	대 벽 리	대 벽 리 일 원
	율 도 리	율 도 리 일 원
	서 대 리	서 대 리 일 원
	광 천 리	광 천 리 일 원
	지 족 리	지 족 리 일 원
	옥 천 리	옥 천 리 일 원
	당 저 리	당 저 리 일 원
	상 죽 리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를 제외한 상죽리 일원
	수 산 리	수 산 리 일 원
	부 윤 리	부 윤 리 일 원
	오 용 리	오 용 리 일 원
가 인 리	가 인 리 일 원	
진 동 리	진 동 리 일 원	
계	79	221

남해군 공고 제2023-1300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보상협의서류 및 의견서 공문 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2.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108-2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4.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 5. 공고기간 : 2023. 9. 25. ~ 2023. 10. 10.(15일)
-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또는 토지소재지	비 고
1	김*영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92-10	
2	김*기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91-1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보상 관계서류 수령장소: 남해군 건설교통과(☎ 055-860-3314)

남해군 공고 제2023-1301호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남 해 군 수

1. 규 정 명 :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2. 개정이유 : 기존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안전·보건 기본원칙(안 제4조)
- 준수 의무(안 제4조의2)
- 관리감독자(안 제7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 제10조의2)
-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시행(안 제26조의2)
-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안 제38조의2)
-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안 제38조의3)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 제42조)
- 무재해운동(안 제51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0월 16일까지

-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6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전화 055-860-3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훈령 제 호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소속 근로자
2.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준수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등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립한 안전보건계획에 대하여 지도·조언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안전검사)”를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안전검사를”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검사를”로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제32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요인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감소대책을 이행한다.

제38조의2(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제38조의3(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군수는 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이 될 때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무재해운동) 군수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